

대신대학교 학부 장학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장학금 지급방침에 관한 심의를 위해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장학위원회는 본교 학과장 및 기획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조 (업무관장)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학생처장이 관장하며 학생과에서 통괄한다.

제4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의 신청은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한다.(정해진 기간 내 첨부서류 업로드 포함)

제5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종류) 본교의 장학금은 성적장학금, 임원장학금, 가족장학금, 복지장학금, 은혜장학금, 외국인유학생, 근로장학생, 교직원 및 직계, 교직원 형제자매, 외부장학금 등이 있다. 개정(2018.8.27.)

제7조 (지급기준) ① 성적우수 장학생은 평균평점 3.8 이상으로 하며, 각 학년 학과(부) 10명부터 10%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2015.8.20.)

② 학과(부) 수석은 평균평점 3.8 이상인 자로 하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학과수석 기준 미달 시 학과 최고 득점자를 학과수석으로 한다.

학과(부) 학년별 학년수석(성적기준 3.8이상, 학년별 인원기준 15명 이상)은 수업료 반액을 지급하며 이 때 해당학년 학과(부) 학생이 35명 이상일 경우 학과 차석(성적기준 3.8이상)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개정(2015.8.20.)

③ 학과(부)수석이 선발된 학과(부)는 별도로 학년수석을 둔다

④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수혜자(보훈대상자 및 자녀)는 법률에 의거, 규정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⑤ 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 소속된 목사와 강도사 및 전임전도사(해당 노회 소속된 자로서 현직)의 본인, 배우자, 자녀(미혼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⑥ 부부, 형제자매, 부모자녀로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⑦ 본교 교직원 및 교직원 자녀로서 본교에 재학하는 자에게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직원 형제인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⑧ 외국인 학생은 지난 학기 성적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2018.8.27. 개정)

⑨ **평균 평점이 동점일 경우(2019.2.1. 개정)**

1. 백분위 실점평점이 높은 순서로 처리한다
2. 취득학점이 많은 순서로 처리한다.
3. 최고 성적이 많은 순서로 처리한다.
4. 필수학점의 평점이 높은 순서로 처리한다.
5. 학과수석 장학금의 경우 동점일 때 고학년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동 일학년에 서 최고득점자 복수일 경우에는 저연령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제8조 삭제 (2015.8.20.)

제9조 (특별장학금) 평균 평점 3.0(평균 80점) 이상인 자로서 필요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10조 (신입장학생선발기준) 신입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기준은 신입생 입학시험 전에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후 시행한다.

제11조 (임원장학금) 성적(최)우수 장학생을 제외한 총학생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총학생회장은 수업료 전액으로 한다.
2. 총학생회 부회장은 수업료 반액으로 한다.
3. 기타 임원, 대의원, 각학회장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2조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1 항 (목적) 본교 재학생들에게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며 이를 통하여 학교를 위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제 2 항 (구분) 근로는 지정근로와 수시근로로 구분한다.

① 지정근로

교내 각 부서에 지정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를 지정근로라 한다.

② 수시근로

교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할시 배정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를 말한다.

제 3 항 (근로신청) 근로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매 학기 공고기간에 근로 신청서를 학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 4 항 (선발 및 배정) 근로장학생의 선발 및 배정은 아래와 같다.

① 선발

1. 성적평균 2.5이하인 자와 중징계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2. 지정근로자인 경우 사무능력이 뛰어난 자를 우선 선발한다.
3.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상급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② 배정

1. 근로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부 처장은 지정 및 수시 근로 소요 인원을 학생과로 의뢰한다.
2. 학생과는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한다.

제 5 항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4시간을 기준 하여 주당 20시간까지 하며 부득이 근로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학생과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한다.

제 6 항 (재원) 근로장학운영을 위한 기금은 당해 학기 개시 전에 교내장학금 재원 중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항 (근로금) 당해 지정 또는 수시 근로금은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본 장학위원회에서 책정한다.

제 8 항 (근로금지급) ① 지정근로인 경우 매월말 해당 부처장의 확인으로 학생과에서 품의 후 익월 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시 근로자인 경우 학기말 해당 부처장의 확인으로 학생과에서 품의 후 당 학기말에 지급한다.

제 9 항 (근로장학생 교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근로실적이 저조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부처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장학생을 교체한다.

제13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